

제6장 한국의 경호조직

학 습 목 표

- 우리나라의 경호조직에 대하여 학습한다.

제1절 한국의 경호조직

공경호조직은 대통령경호처를 위시하여 경찰, 군 등 여러 경호조직이 경호관련 업무 수행 대통령경호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대통령경호처장

우리나라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있다(정부조직법 제16조 제1항).

이러한 대통령경호처에는 최고기관으로서 정무직(政務職)으로 대통령경호처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2항).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차장은 정무직·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제3항).



대통령경호처 조직도

2. 하부조직

법적 근거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하부조직으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경호안전교육원, 그리고 실무부서로서 경호본부, 경비본부, 안전본부를 두고 있다.

1) 경호본부

경호본부는 대통령 행사 수행 및 선발경호활동을 담당하고, 방한하는 외국정상, 행정수반 등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경비본부

경비본부는 청와대 주변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내·외곽을 담당하는 군·경찰 경호부대를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안전본부

안전본부는 국내외 경호관련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행사장 안전대책의 강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1) 목적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 위원회 구성

위원장(경호처장)과 부위원장(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구성

- ①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 ②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 ③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④ 국방부 조사본부장
- 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 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 ⑦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⑨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⑩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⑪ 경찰청 보안국장 그런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 ⑫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 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⑭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 ⑮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 ⑯ 수도권방위사령부 참모장
- ⑰ 그 밖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

3) 위원회 업무와 책임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 정보의 교환 및 분석

그 밖에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1) 공동책임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분장책임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들은 안전대책활동과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각 분장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소재를 구분 함으로써, 안전대책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문제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계기관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1) 경찰

대통령 등 갑호 경호대상자에 대한 제2선과 제3선의 경호업무 제공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급 등 을호, 병호 경호대상자들에 대한 경호업무

(2) 군

군부대 내의 보안 및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주로 경호와 관련된
경호계획 및 협조업무를 담당
수도방위사령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도 지원업무 수행